

## 생산물 리콜 보험의 활성화 필요

송윤아 연구위원

-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리콜사태에서 보듯이 리콜은 기업의 존폐 여부가 거론될 만큼 천문학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임. 더불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제품의 자발적·강제적 리콜이 증가하고 있음. 리콜손실위험 증가기능성에도 불구하고 2003년 국내에 도입된 리콜 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삼성전자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리콜손실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리콜(recall)사태가 발생하면서 리콜에 따른 손실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리콜비용이 최대 1조 9.4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됨 1)
    - 동 수치는 250만 대를 전량 폐기처분할 경우에 드는 순비용임.
    - 수거물량을 재조립 후 할인 판매하거나 미개통 물량에 대해서는 수리 후 정상 판매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약 5,100억 원에서 8,7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됨.
  - 폭스바겐은 연비와 배기가스 배출수치 조작으로 1,100만 대 리콜을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손 실비용이 652억 달러(약 7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표 1〉 참조).

(표 1) 자동차 리콜 관련 손실액 사례

리콜 기업	리콜 사유	대수	리콜 비용
도요타	가속페달 결함 관련	1,200만 대	\$28억(3조 652억 원)
GM	동력조향장치 관련	2,600만 대	\$33억(3조 6,125억 원)
현대차 그룹	연비 과대표시 관련	120만 대	\$7억(7,663억 원)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수치 조작 관련	1,100만 대	\$652억(71조 3,744억 원)

주: 리콜 비용은 벌금, 소송비용, 규제포인트 삭감 환산금액 등을 포함함. 자료: SK증권 분석보고서(2015, 10, 13), 「자동차: 폭스바겐의 무리수」.

<sup>1)</sup> IBK투자증권 Issue check(2016. 9. 5), 「삼성전자, 갤노트7 배터리 게이트 리콜 영향 체크」.

-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자발적·강제적 리콜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리콜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리콜제도를 두고 있음.²)
    - 리콜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하거나(자진리콜). 행정기관 등이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명령할 것을 규정함.
  - 2015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1,586건으로 2014년(1,752건) 대비 166건(9.5%)이 감소함(〈그림 1〉 참조).
    - 이는 2014년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대규모 리콜명령으로<sup>3)</sup> 대폭 증가했던 의약품 리콜이 예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일 뿐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유지함.
    - 근거 법률별로 살펴보면, 13개 관련 법률 중「제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약사법」·「자동차관리법」의 4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약 83.7%에 달함.
    - 리콜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890건으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한 가운데, 자진리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3년 263건→2014년 339건→2015년 536건).
  -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이 강력해 리콜이 활성화되어 있음.
    - 자동차 리콜은 지난 30년 동안 증가추세에 있으며,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차량대수 대비 리콜차량대수의 비율은 28~115%에 이를 정도로 높음(〈그림 2〉참조).4)
- 이러한 리콜손실위험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03년 국내에 도입된 리콜 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리콜 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이란 제품불량의 고지, 제품회수, 제품수리까지의 비용을 담 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임 5)
    - 불량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리콜 보험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관련한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함.
  - 2002년 7월「제조물 책임법」시행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리콜 보

<sup>2) 1991</sup>년 2월,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을 시정하는 제도로서 리콜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2년 9월에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리콜제도(「자동차관리법」), 1996년 12월에는 식품 리콜제도(「식품위생법」)가 각각 도입됨. 그리고 1996년 4월부터는 당시 「소비자보호법」에 모든 물품(소비재) 및 용역을 대상으로 리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sup>3) 5</sup>개 제조업체가 품질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여 한약재를 제조한 정황을 발견하고 전 품목(561건)을 리콜하도록 명령함.

<sup>4)</sup> http://www.forbes.com/sites/jimgorzelany/2014/03/26/automakers-with-the-lowest-and-highest-recall-rates/# 571a69920085.

<sup>5)</sup> 예를 들어, 리콜 사실을 알리는 광고비용 및 통신비용, 제품 수리 및 대체 비용, 수송비용,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회수에 사용된 창고비용 등을 포함함.

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국내 기업이 리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리콜에 따른 손실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6)
- 반면, 제조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그 필요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음

〈그림 2〉미국 자동차 리콜실적(1980~2014년) 〈그림 1〉 우리나라 리콜건수 추이(2000~2015년) (단위: 건, 천대) (단위: 건) 1800 70,000 1600 1400 1200 40.000 1000 800 30.000 300 600 20,000 200 400 100 2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리콜거수 → 리콜차량 →리콜총수 ──리콜명령 ──자진리콜(권고포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up>6)</sup>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소비자와 언론의 부정적 인식(82.5%)과 소비자 불신에 따른 매출 감소(62.9%), 소비 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58.8%) 등으로 인해 리콜에 소극적임; 최은실(2012), 『리콜제도 현황 및 의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